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0.06.19.

개정 2022.03.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기관)의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적용한다.

② 안전·보건 관련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현업업무 종사자(공무원 포함)를 말한다.
2.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불안정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기계적 설비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행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교육청의 현업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교육감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6. “관리감독자”란 각급 학교(기관)의 현업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분임관리감독자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7. “분임관리감독자”란 관리감독자로부터 안전보건업무를 위임받아 소관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안전·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자격자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안전사고”라 함은 고의성이 없는 사건으로 불안정한 인간의 행위나 불안정한 물리적 환경조건이 선행되어 생산능률을 저하시키며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10. “중대재해”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4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안전보건관리 기본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매년 12월말까지)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감독자) ① 각급 학교의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으로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기 위해 분임관리감독자를 둘 수 있다.

1. 각급 학교(기관)의 조리기구·기계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각급 학교(기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각급 학교(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각급 학교(기관)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각급 학교(기관)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요지의 교육·지도
6.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7.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분임관리감독자는 각급 학교(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각급 학교에서 교감, 행정실장, 영양교사(영양사)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자는 본청(총무담당사무관)·직속기관(총무부장 또는 관리과장)·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리적·장소적으로 원활한 안전보건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분임관리감독자를 둘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해당 각급 학교(기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각급 학교(기관)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각급 학교(기관)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각급 학교(기관)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1. 그 밖의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보건역) ① 교육감은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임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 전환·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의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각급 학교(기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타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11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 제12조(안전보건교육계획 시행)** ① 교육감은 안전·보건관리계획에 교육계획을 반영하여 시행한다.
- ② 안전·보건교육은 각급 학교(기관)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 제13조(산업안전·보건 관련 정기교육)** ① 현업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정기교육의 주기(매분기)는 학교의 학사 운영단위와 동일하게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 ③ 제1항의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7. 기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④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
1. 관리감독자, 분임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부강사
 4.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위탁(인터넷교육 포함) 가능
 5. 기타 법률상 안전보건교육강사 자격을 갖춘 자

제14조(신규채용자 교육) 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담당업무 종사 전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교육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원격으로 실시한다.

제15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작업내용(직종)이 변경되는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2시간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의 내용은 이 규정 제17조 제2항 및 변경된 업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한다.

③ 교육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실시한다.

제16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실시한다.

제17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교육실시 시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할 경우
2. 신규 채용하여 대상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작업을 전환하여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4. 대상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대상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물리적 위해성 및 건강 유해성
3.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처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를 이해하는 방법

③ 관리감독자는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대장을 각급 학교(기관)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19조(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① 이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 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가 실시하며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기록·보존)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직업장 안전관리

제21조(안전보건관리 계획 시행) ① 교육감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은 각급 학교(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시기
2. 근골격계질환 재해예방 사항
3. 안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현황 및 재해분석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22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② 근로자는 각급 학교(기관)에서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검사)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④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표준 안전보건 작업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표준작업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 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 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25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각급 학교(기관)에 보관 또는 저장되어 있는 위험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은 위험물관리자,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저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며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제26조(작업중지)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표지) 각급 학교(기관)에는 법 제37조에 의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의 종류·형태·용도·사용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7에 의한다.

제28조(점검의 종류와 시기) ① 교육감은 안전 및 보건관리자와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정기, 수시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는 당해 작업 전반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점검방법) 점검자는 점검시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 하되 점검표의 내용은 각급 학교(기관)의 불안정한 상태 및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하며, 점검대상 각급 학교(기관)은 전체를 대상으로 재해발생 각급 학교(기관)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기계 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 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일상 점검 상태
-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30조(점검 결과 조치) ①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경유,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작업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해결책을 강구, 시정 조치하도록 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 지시를 하고 작업자는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하며, 점검 주관자는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는 즉시 작업의 중지 또는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안전기준) 교육감은 각급 학교(기관) 내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2조(건강진단의 구분) ① 교육감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② 상기 1항의 건강진단의 종류에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으로 구분한다.

제33조(건강진단 실시 방법) ① 일반 건강진단은 1년 이상 계속 근로자로서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특수 건강진단 및 기타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여야 하며, 배치 전 및 수시·임시건강진단도 이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진단결과 조치) 건강진단결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의 변경
2. 작업의 전환
3. 근로시간의 단축
4. 기타 적절한 조치

제35조(질병자 근로 금지 등) ①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에 대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근로의 금지, 제한 및 재취업을 결정할 때에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작업환경측정) ① 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장에 대해서는 측정 주기가마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업 환경을 측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 환경 측정은 작업환경 측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근로자 대표 요구시 근로자 대표, 명예감독관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37조(측정결과 조치) ① 작업환경 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당해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기관으로 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물질안전보건자료) ①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재재를 사용, 운반,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제39조(보호구착용 작업 등) ① 관리감독자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특성에 맞는 보호의(앞치마 등),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미끄럼방지 장화 등
2. 기타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② 개인보호구를 해당 근로자 전원에게 지급하고 보호구 지급대장에 서명·날인 후 각급 학교(기관)에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는 반드시 노동부장관이 실시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사용한다.

④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

⑤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는 보호구를 항상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지급된 보호구는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작업반장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 하여서는 안 된다.

제40조(보건기준 등) ① 교육장은 작업장의 조명, 정리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의 보건기준을 기초로 작업자의 건강상 특히 필요한 곳에는 보건 수칙을 제정하여 전파한다.

③ 보건수칙은 관계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작업자는 보건수칙을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 제41조(근골격계질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세부사항은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시행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요인조사는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제42조(재해 발생시 보고)**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의 직속 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상급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재해의 정도에 따라 응급구호(119)를 요청 후 통보 할 수 있다.
- ② 연쇄(2차) 재해발생을 방지하고, 재해조사를 위한 현장보존을 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되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의 발생 또는 사망하여 산재 처리를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청에 사고보고서[별지1호 서식] 및 목격자진술서[별지2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별지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3조(재해 발생시 조치)** ①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작업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응급구호(119) 요청 및 현장에서 가능하고 필요한 응급조치(인공 호흡 등)를 해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연쇄(2차)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4조(비상연락망 편성) 각 사업장별 재해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한다.

- 제45조(재해조사)** ① 재해발생시 사고지점의 사고 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 및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중대재해 발생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청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 ③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한 사고 보고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보고 된 사고보고서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의 재해조사를 통해 재해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재해현장에 통보한다.

- 제46조(재해분석)** ①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매 반기 중에 발생한 재해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매 익년 1월 중에 전년도 발생 재해 원인 등을 분석,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재해분석 결과 및 시행 계획을 각급 학교(기관)에 통보하고, 각급 학교(기관)에 공고하여 근로자 및 안전관계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 제47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기관)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8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기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각급 학교(기관)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제49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각급 학교(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8장 보 칙

제50조(표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와 해당 기관 및 학교
3.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한 자
4.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

제51조(징계) ①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교육청에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 조치 할 수 있다.

② 징계사유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계자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자
2.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 시킨 자
3.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교육청에 손해를 끼친 자

제52조(문서기록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결과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3조(문서의 보고·처리) 각급 학교 산업안전보건업무는 해당 영역별(교무, 행정, 급식)로 문서의 보고·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 영역의 경우에는 행정실이 관련부서(교무실, 급식실 등)와 협조하여 취합 처리한다. 단, 문서의 취합 보고처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분야 업무에만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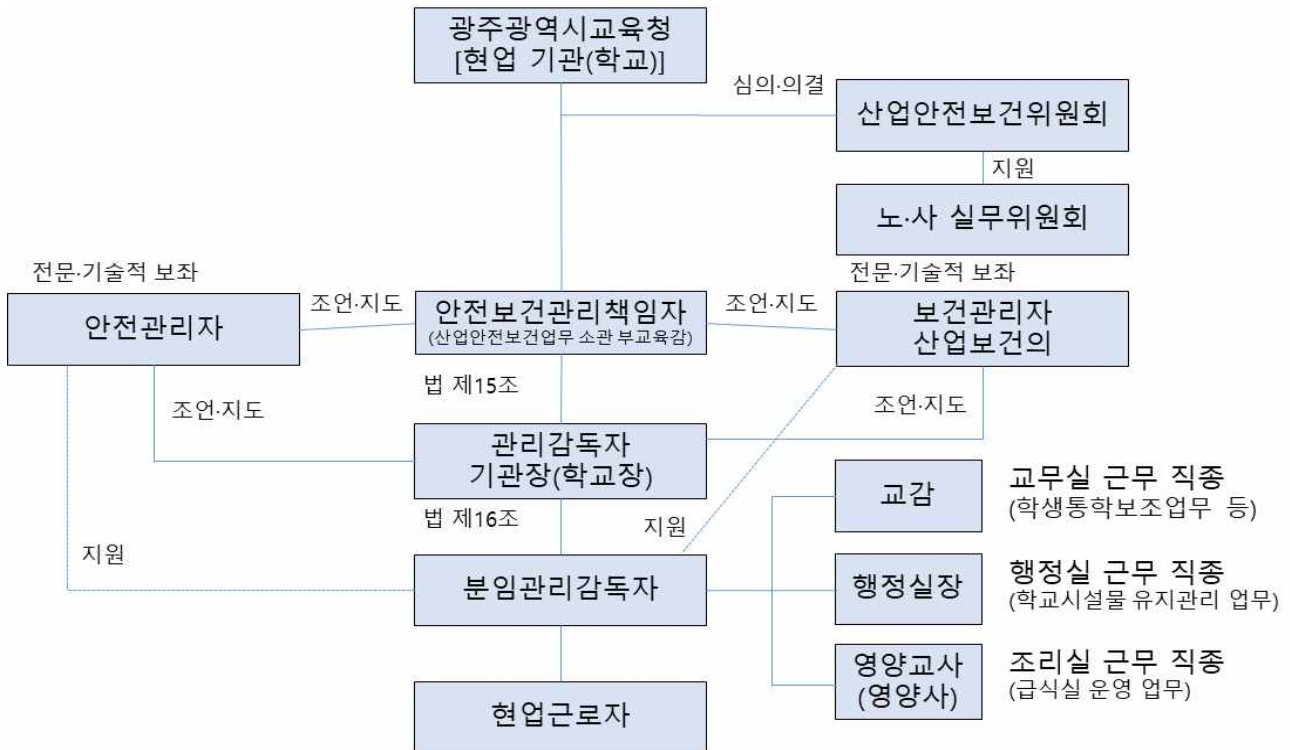
부 칙 <2022.03.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 개정) 이 규정과 관련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개정된 법률을 준용한다.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사고 보고서

작성일자 : 20 작성자 :

결재	담당	실장(교감)	교장
발생 학교			

피재자	소속학교			성명	
	채용일자		주민번호	휴대전화	
	자택주소				
사고 개요	사고발생일시			발생장소	
	작업명 (작업형태)			작업감독	
	상해부위			상병명	
목격자	소속학교			성명	
	채용일자		주민번호	휴대전화	
제목					
사고 개요 (6하 원칙)					
사고 상황도 (사진)			사고 발생 형태	예) 넘어짐, 화상, 절단, 베임, 찢림, 충돌 감김, 끼임 등	
			사고 원인	1. 2. 3.	
			예방 대책 및 조치 결과		

위 보고서는 사실과 이상이 없음

목격자 진술서

피 재 자	소속학교		소속지원청		성명	
	사고일시		상병부위		상병명	
목 격 자	소속학교		소속지원청		성명	
	채용일자		주민번호		휴대전화	

목격내용 (사고목격 상황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행위자 (누가)		
일시 (언제)		
장소 (어디서)		
행위내용 (무엇을)		
경위 (어떻게)		
이유 (왜)		
참 고 사 항	목격당시의 작업내용	
	사고 당시의 동료작업자	
	사고지점과의 위치 및 거리	
	목격자가 생각하는 사고원인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진술합니다.

작성 방법

I. 사업장 정보

- ①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② 사업장명: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③ 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 ④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 [예: 체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⑥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⑦ 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⑧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⑨ 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II. 재해자 정보

- ⑩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 ⑪ 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 ⑫ 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 ⑬ 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 바.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등
- ⑭ 근무형태: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 시간제: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 ⑮ 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 ⑯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목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배설) 등]
 -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 ⑰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III. 재해발생정보

⑱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정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정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⑲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IV. 재발방지계획

⑳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 20 -

[별지4-1호 서식] 일일 안전교육 및 위생점검 체크리스트(급식실용) (제20조 관련)

	() 학교			영양(교)사	행정실장 / 교감	학교장	
	일일 안전교육 및 위생 점검 체크리스트 [년 월 일]						
■ 안전교육							
교육 시간	오전 08 : 40 ~ 08 : 50 (0시간 10분)			교육 구분	정기 교육		
교육 참석자	총 인원 : 명, 참석자 : 명, 미참석자 : 명			교육실시자			
교육 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 ○ 산안법 및 일관리에 관한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사항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사항			교육 방법	강 의 식		
◆ 참석자 서명 ◆							
no	직책(종)	성 명	서 명	no	직책(종)	성 명	서 명
1	조리사			6	조리원		
2	조리원			7	조리원		
3	조리원			8	조리원		
4	조리원			9	조리원		
5	조리원			10	조리원		

■ 일일 위생 및 안전점검표 [작성요령 : 양호 ○, 불량 × (불량시는 시정(예정)조치 내용을 기재)]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위치)	즉시조치 및 예정사항
개인위생	1. 설사·발열·구토 및 화농성질한 여부확인 ?		
	2. 가족 및 동거인의 상기질환 여부 확인?		
	3. 위생모·위생복·작업화 등의 청결 여부 확인?		
	4. 손세척 및 세척의 필요성 숙지여부 확인?		
	5. 손톱의 청결 및 장신구(반지 등) 착용 여부 확인?		
	6. 조리종사원의 심리적 안정상태 여부 확인?		
원료및식품의취급	1. 변질·부패 및 유통기한 경과여부 확인 ?		
	2. 저장조건, 포장·용기 등의 적정상태 확인?		
	3.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구분보관 여부 확인?		
	4. 적정보관 온도 준수여부 확인?		
	5. 가열조리식품과 비가열조리식품의 구분 여부 확인?		
	6. 가열조리식품의 신속냉각 및 적정 보관 여부 확인?		
	7. 과채류 등 원료의 절단시 세척 선행 여부 확인?		
	8. 식품 조리 및 배식시 마스크 착용여부(권장)		
	9.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보관 또는 조리 등의 가공등 재사용 여부		
조리·가공시설및설비	1. 일반구역, 청결구역 구분여부 확인?		
	2. 방충, 방서 및 이물질 혼입 방지 여부 확인?		
	3. 육류, 채소류 등 원료별 조리기구의구분 및 사용여부 확인?		
	4. 칼·도마행주등 조리기구 및 설비등의 적정 세척, 소독 여부		
	5. 작업장내 수세시설 및 소독시설의 구비 및 작동여부 확인 ?		
	6. 작업장 바닥의 물고임 방지 및 배수구 개폐용이 여부 확인?		
안전관리	1. 환기설비(국소배기장치등)의 정상 작동여부?		
	2. 종사원의 금일 사용하는 물질안전자료의 유해성 숙지(교육)여부?		
	3. 금일 작업 중 위험포인트(화상위험, 미끄러짐, 중량물 취급, 고소작업 등)에 대한 작업방법 및 재해예방대책 숙지여부 ?		
	4. K급 소화기등 비치 및 압력 정상여부(소화기 위치 숙지) ?		
	5. 급식 기계·기구 동작 및 전열기구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 ?		
종합의견			

	(〇〇〇 유치원) 일일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표 [년 월 일]			계	분임관리감독자	학 교 장	
	■ 안전교육						
교육 시간	오전 08 : 40 ~ 08 : 50 (0시간 10분)			교육구분	정기교육		
교육 참석자	총 인원 : 명, 참석자 : 명, 미참석자 : 명			교육실시자			
교육 내용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2. 보건 및 직업병 예방 3.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4.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 5. 산안법 및 일관리에 관한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사항 등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사항			교육방법	강의식		
	교육자료	안전보건교육자료집 # 7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 참석자 서명 ◆							
no	직책(종)	성 명	서 명	no	직책(종)	성 명	서 명
1				7			
2				8			
3				9			
4				10			
5				11			
6				12			

■ 일일 안전점검표 [작성요령 : 양호 ○, 불량 × (불량시는 시정(예정)조치 내용을 기재)]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위치)	즉시조치 및 예정사항
시설관리	1. 금일 작업내용 확인 및 작업계획 수립여부 ?		
	2.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안전점검 실시 여부 ?		
	3.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은 숙지 하였는가 ?		
	4. 작업내용에 따른 인원배정은 적절한가?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특이사항은 없는가?		
청소	1. 청소구간의 정리정돈 및 청소용품(세척제포함)의 관리상태 ?		
	2. 물청소 작업 중 전기기구 또는 콘센트에 물 접촉 가능성은 없는가 ?		
	3. 청소구간의 미끄럼 상태 확인 및 미끄럼방지 장화등 보호구 착용여부 ?		
	4. 쓰레기 운반 등 중량물 운반용 대차 사용이 가능한가?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특이사항은 없는가 ?		
당 직	1. 야간순찰용 손전등 및 보호구 구비여부 ?		
	2.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특이사항은 없는가 ?		
통학보조	1. 차량 운행 및 탑승 전 차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2. 학생의 승하차 보조업무 중 업무위치 및 자세는 적절한가 ?		
	3.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특이사항은 없는가 ?		
종합의견			